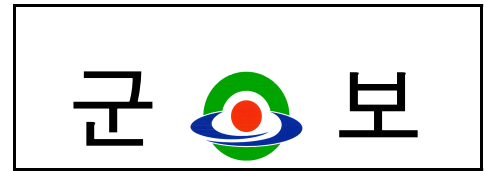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90호 2019. 9. 23.(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보상계획 열람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1052호)
-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054호)
-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056호)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06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미집행 도시공원(남산공원, 서본공원) 사유토지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예 천 군



1. 사 업 명 : 미집행 도시공원(남산공원, 서본공원) 사유토지 보상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3. 사 업 기 간 : 2019년 ~ 2020년
4. 사 업 개 요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의 위치	비 고
공 원	미집행 도시공원 (남산공원, 서본공원) 사유토지 보상	- 남산공원(9필지) A= 17,823㎡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대심리, 서본리 일원	
		- 서본공원(42필지) A= 52,158㎡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참조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9.09.23.부터 ~ 2019.10.07.까지(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붙임)

라.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붙임양식)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10~11월중 개별통지에정)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합니다.

나. 단,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라.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내역,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8. 보상금 지급

가.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예천군” 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나.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조서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10.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 될 경우 보상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도시과(☎054-650-6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예천군소재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남산공원>												
1	예천	남본	42-1	42-10	임	11,151	9,974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688	단양장씨 예천백파 종중			
2	예천	남본	174	174	전	377	377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 688	단양장씨 예천백파 종중			
3	예천	남본	175-1	175-1	전	774	774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51	강○모			
4	예천	남본	175-2	175-2	대	658	658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51	강○모			
5	예천	남본	172-1	172-1	전	1,917	1,91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	최○한			
6	예천	남본	172-2	172-3	전	1,950	496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	최○한			
7	예천	남본	173	173	전	2,741	2,39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31길 25(침산동)	김○진			
	예천	남본	173	173	대	2,741	346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31길 25(침산동)	김○진			
8	예천	동본	410	410	전	298	298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67	배○영			지분 1/3
	예천	동본	410	410	전	298	298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지분 2/3
9	예천	동본	414-5	414-5	묘	588	588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동 222-22	황○원			
<서본공원>												
1	예천	대심	47-2		전	370	162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6	김○규			지분 3/54
	예천	대심	47-2		전	370	162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1-9	김○조			지분 12/54
	예천	대심	47-2		전	370	162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2 풍림아파트 101-107	김○희			지분 3/54
	예천	대심	47-2		전	370	162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7-202, 1층	김○옥			지분 2/54
	예천	대심	47-2		전	370	162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7-1	이○남			지분 34/54
2	예천	대심	47-1		대	413	395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42-2	김○조			지분 12/36
	예천	대심	47-1		대	413	395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7 28	김○옥			지분 2/36
	예천	대심	47-1		대	413	395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7-1	이○남			지분 22/3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지번 소재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3	예천	대심	47-3		전	651	63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1-9	김○윤			
	예천	대심	47-3		전	651	63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5	지○환			
4	예천	대심	48		전	935	24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5	지○환			
5	예천	대심	38-5		전	169	73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5	지○환			
6	예천	대심	39		전	1,584	1,58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5가 376	백○일			지분 1/2
	예천	대심	39		전	1,584	1,584	예천군 예천읍 석정동 123	백○만			지분 1/2
7	예천	대심	38-6		전	1,353	1,353	예천읍 대심리 430 주동아파트 105-1105	김○기			
8	예천	대심	35-2		전	1,891	1,891	예천읍 대심리 35-2	권○호	근저당 권	예천군 새마을금 고	지분 307/576
	예천	대심	35-2		전	1,891	1,891	예천군 예천읍 서본동 3-10	오○조			지분 146/576
	예천	대심	35-2		전	1,891	1,891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4-2	임○우			지분 400/576
9	예천	대심	36		전	3,303	3,303	예천군 예천읍 서동본 60	이○팔			
10	예천	대심	34-1		전	2,555	1,935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376	백○일			지분 1/2
	예천	대심	34-1		전	2,555	1,935	예천군 예천읍 석정동 123	백○만			지분 1/2
11	예천	대심	35-1		대	13	13	예천군 예천읍 대심동 25	권○호	압류	예천군	지분 30/576
	예천	대심	35-1		대	13	13	예천군 예천읍 서본동 3-10	오○조			지분 146/576
	예천	대심	35-1		대	13	13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4-2	임○우			지분 400/576
12	예천	대심	40		묘	6,215	5,841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56-3 메트로팰리스 107-1703	백○현			
13	예천	대심	37		임	2,670	2,670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376	백○일			지분 1/2
	예천	대심	37		임	2,670	2,670	예천군 예천읍 석정동 123	백○만			지분 1/2
14	예천	서본	252		임	1,261	1,2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3동701호(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장○진			
15	예천	서본	251		임	3,697	3,697	구미시 비산동 368 벽산아파트 101-506호	정○숙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지번 지번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16	예천	서본	247		묘	6,202	6,202	남본동	이○장			미등 기
17	예천	서본	244		묘	1,306	1,30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리	정○호			
18	예천	서본	239-1		전	313	313	예천읍 서본리 27	안○철			지분 600/ 1275
	예천	서본	239-1		전	313	313	광주시 태전동 193, 태전지구 3단지성원아파트 305-1203	최○승			지분 200/ 1275
19	예천	서본	245		임	5,045	5,045	부산광역시 서구 알남공원로 52, 1동1510호(안남동, 송도혜성비치타운)	정○탁			
20	예천	서본	249		전	413	4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5번길 96, 105동508호(분평동, 우성아파트)	황○섭			
21	예천	서본	250-1		전	499	49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4 0, 205동303호 (범물동, 동서청아타운)	권○호			
22	예천	서본	65-29		전	157	157	예천읍 서본동 65-26	권○순	근저당권	사공○자	
23	예천	서본	65-26		대	188	12	예천읍 효자로 19-32	사○완	근저당권	사공○자	
24	예천	서본	65-31		대	260	8	예천읍 흑응로 10	김○자			
25	예천	서본	65-25		대	331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4길 9-30(화곡동)	이○익			
26	예천	서본	65-15		임	4,013	2,469	예천읍 서본리 65-28	장○기	가압류 가처분 결정	농업협동 조합 자산 관리회사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지분 1434/ 1521
	예천	서본	65-15		임	4,013	2,469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65-15	권○춘			지분 37/ 1521
	예천	서본	65-15		임	4,013	2,4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481, 105동 901호 (문덕마린빌)	김○식			지분 50/ 1521
27	예천	서본	246		전	1,881	1,881	예천군 예천읍 서본동 60	김○진			지분 509/ 569
	예천	서본	246		전	1,881	1,881	예천군 예천읍 서본동 67	장○기			지분 60/ 569
28	예천	서본	68		임	175	175	예천읍 서본동 220	장○기	채권자	예천새 마을금 고	
29	예천	서본	65-2		임	552	552	대구 서구 내당동 308 삼익뉴타운 206-208	이○식			
30	예천	서본	65-14		임	2284	2255	대구 서구 내당동 308 삼익뉴타운 206-208	이○식			
31	예천	서본	65-20		대	331	115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8번길 22	정○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계속)

의견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32	예천	서본	69		전	222	222	예천읍 서본리 67-2	장○기	채권자	예천새 마을금 고	
33	예천	서본	65-11		전	400	288	예천읍 서본동 220	장○기	채권자	예천새마 을금고	
34	예천	서본	65-28		임	1015	415	예천읍 서본동 220	장○기	근저당권	예천농업 협동조합	
35	예천	서본	67-2		대	208	40	예천읍 서본리 67-2	이○성			
36	예천	서본	65-4		대	79	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무지개마을 304-101	이○원			
37	예천	서본	65-8		대	245	15	예천읍 통명동 27	김○진			
38	예천	서본	243-3		전	860	860	예천읍 서본리 70-12	도○자			
39	예천	서본	243-6		전	172	172	예천읍 서본동 8-42	유○희			
40	예천	서본	241		전	1857	1857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1-9	김○윤			
41	예천	서본	71		묘	1399	1350	부산 사상구 주례동 166-86	김○훈			
42	예천	서본	73-2		임	1418	1289	구미시 임수동 274	김○배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읍· 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 소	성 명	
<남산공원>											
1	예천	남본	175-1		소나무	10년(2 60주)	식	1.0			
					호두나무	20년	주	1.0			
					매실나무	10년	주	2.0			
					자두나무	10년	주	1.0			
					헛개나무	10년	주	2.0			
					뽕나무	10년	주	15.0			
					산초나무	8년	주	2.0			
					단풍나무	20년	주	3.0			
					단풍나무	15년	주	6.0			
					두충나무	20년	주	5.0			
					사철나무		식	1.0			
					등나무	20년	주	1.0			
					두릅		식	1.0			
2	예천	남본	175-2		주택	블록 칼라강 판	m²	3.66			
					창고	블록 판넬	m²	17.25			
					창고및 화장실	블록 칼라강 판	m²	11.0			
					방	컨테이 너 판넬지 붕	m²	24.0			
					창고	파이프	m²	73.5			
					차고	파이프	m²	24.5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계속)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소	성명	
2	예천	남본	175-2		저온창고		m ²	10.0			
					가작	파이프, 갈바룸	m ²	22.0			
					장독대및 수도대		식	1.0			
					대문		식	1.0			
					웬스	강관갈바룸	m ²	24.0			
					헛개나무	10년(2주)	식	1.0			
					뽕나무	30년	주	2.0			
					은행나무	30년	주	2.0			
					산수유	50년	주	1.0			
					회양목	30년	주	1.0			
					능소화	20년	식	1.0			
					목련	10년	주	1.0			
					박태기	5년	주	4.0			
					장미	10년	주	1.0			
					단풍나무	5년	주	1.0			
					작약		주	10.0			
					라일락	5년	주	3.0			
					수국	5년	주	1.0			
					골담초		식	1.0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계속)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소	성명	
2	예천	남본	175-2		느티나무	15년	주	1.0			
					어름나무		군	1.0			
					자귀나무	25년	주	1.0			
					자귀나무	7년	주	1.0			
					잣나무	30년	주	1.0			
					잔디		m ²	50.0			
					조경수 울타리	(무궁화, 탕자)	M	27.0			
3	예천	남본	172-1		관정실	벽돌스 라브 (복층 구조)	m ²	7.84			
					관정	농사용	식	1.0			
4	예천	남본	173		주택	블록 기와	m ²	49.1 7			
					방	블록 스레트	m ²	9.92			
					방	블록 스레트	m ²	23.4 0			
					보일러실	블록 스레트	식	1.0			
					계사	블록 스레트	m ²	22.7 5			
					마당		m ²	60.0			
					장독대및 수도대		식	1.0			
					감나무	40년(1 주)	식	1.0			
					단감나무	40년	주	2.0			
					포도나무		주	4.0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계속)

구분 연월일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 소	성 명	
4	예천	남본	173		살구나무	8년	주	1.0			
					살구나무	40년	주	1.0			
					매실나무	8년	주	2.0			
					감나무	8년	주	37.0			
					뽕나무		주	5.0			
					호두나무	15년	주	1.0			
					두릅		식	1.0			
					체리	8년	주	6.0			
					미니사과나무	8년	주	5.0			
					프론(약자두)	8년	주	5.0			
					대추나무	8년	주	10.0			
					구지뽕나무	8년	주	10.0			
					엄나무	8년	주	5.0			
					블루블랙베리	8년	주	25.0			
					아로니아	8년	주	95.0			
5	예천	남본	176-1		관정	지하수	식	1.0			
					취통나무	20년(2주)	식	1.0			
					매실나무	15년	주	1.0			
					앵두나무	25년	주	1.0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계속)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소	성명	
5	예천	남본	176-1		홍매화	15년	주	1.0			
					명자나무	15년	주	1.0			
					박태기나무	12년	주	1.0			
					감나무	27년	주	3.0			
					헛개나무	5년	주	1.0			
					헛개나무	15년	주	1.0			
					배롱나무	5년	주	3.0			
					보리수나무	4년	주	1.0			
					복숭아나무	4년	주	3.0			
					구지뽕나무	3년	주	1.0			
					대추나무	12년	주	1.0			
					아로니아	5년	주	4.0			
					비타민나무	4년	주	2.0			
					향나무	7년	주	1.0			
					주목	30년	주	1.0			
					두릅나무	20년	주	80.0			
					작약	20년	식	1.0			
					능소화	5년	주	4.0			
					능소화	15년	주	1.0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계속)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소	성명	
5	예천	남본	176-1		소나무	6년	주	1.0			
					소나무	7년	주	1.0			
					구기자		M	20.0			
					라일락		주	1.0			
					천리향		주	1.0			
					주택	블록 스레트	m ²	38.1 6			
					창고	목조	m ²	5.76			
					주택	벽돌 기와	m ²	81.5 6			
					가닥	목조 스레트	m ²	5.0			
					가작	파이프 스레트	m ²	24.4 0			
					보일러실	블록 스레트	m ²	5.0			
					차고	파이프 판넬	m ²	36.0			
					대문	철재	식	1.0			
					담장	블록	m ²	6.0			
					야외아궁이		식	1.0			
					마당	보도블 록, 시멘트	m ²	50.0			
					장독대		식	1.0			
					진입로	보도블 록	식	1.0			
					담장	블록	m ²	14.4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계좌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면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주소	성명	
6	예천	남본	176-1		대문	철재	식	1.0			
					장독대		식	1.0			
					평상		식	1.0			
					감나무	60~70 년(1주)	식	1.0			
					오가피나무		주	2.0			
					매실나무	15년	주	1.0			
					감나무	15년	주	2.0			
					견사		식	1.0			
					바닥	보도블 록, 시멘트	m ²	30.0			
					주택	블록, 함석	m ²	50.6			
					거실	샷시, 함석	m ²	13.6 4			
					가작	스레트	m ²	4.4			
					보일러실 (우사)	블록 스레트	m ²	14.8 4			
					주택	함석	m ²	32.4			
					가작	목조 스레트	m ²	4.5			
					가작 및 변소	블록 스레트	m ²	10.5			
					보일러실	블록 함석	m ²	3.64			
					간이창고	스레트	m ²	3.0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인구증가 시책 추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입 지원 대상자 정의 (안 제2조)

-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세대

나. 전입 지원 내용 (안 제3조)

-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
-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다. 전입 지원 기준 (안 제4조)

- 전입 후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 후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라. 전입 지원 신청 및 절차 (안 제5조)

- 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 지급 및 관리 대장 기록

4.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54-650-6055, 팩스 : 054-650-6059, 전자우편 : wb178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자 및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사랑상품권: 전입자 1인당 1만원
2. 태극기: 전입세대당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전입세대당 200리터(20리터 10매)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 후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입자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가 읍·면에서 직접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읍·면장은 전입신고 시 지원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전입자가 아닌 자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자에게 지원 내용을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자 또는 전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달 5일까지 지급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 등의 비치)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전입자 현황	구분	☐ 세대구성 ☐ 세대편입		
	전입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1			
	2			
	3			
	4			
	5			
지원 내용	☐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장 ☐ 태극기 1세트 ☐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10매)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위임장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을 위의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자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주소		
위임자 신분증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 대장

년

○○읍 · 면

연번	신청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지원 대상자(위임한 사람)			지원 내용	담당자 확인
		성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지원 내용은 1. 예천사랑상품권 10,000원, 2. 태극기 1세트, 3. 쓰레기 규격 봉투 200리터(20리터 10매) 중 번호만 기재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예 천 군



1. 개정 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안 제5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나.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폐지(안 제9조)

- 면책심사 신청기한(감사종료 20일 이내) 삭제로 면책신청 기회 확대

다. 서식 및 용어정비

- 면책심사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불합리한 용어 정비(피감사 → 감사대상, 피감사기관 → 감사대상기관)

3. 개정규정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822 팩스 054-650-6059
- 전자우편 : kanghs0223@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천군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을”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규정」”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4조 중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각각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예천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 심의회 개최 시마다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종료되면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중 “피감사 기관장”을 “감사대상 기관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감사자”를 각각 “감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를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받았으면”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천군 및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책심사신청 안내

예천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 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의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기준	신청내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 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 개요	일시		장소	
	안건			
	양정 (안)			
심사결과				

20 . . .

예천군 면책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간사	(서명 또는 날인)

면책신청(심사)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기관	직위 (직급)	성 명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예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9조 【별지 제7호 서식】

경고 등 처분대장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u>예천군과 그 소속기관</u> 및 <u>하부행정기관</u>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u>규정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u>예천군과 그 소속</u> <u>기관</u> ----- ----- ----- ----- ----- <u>규정함을</u>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 <u>행정감사규정</u> 」 및 「 <u>예천군 자체감사 규칙</u> 」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찰업무 전반	제2조(적용범위) ----- ----- 「 <u>지방자치단체에 대한</u> <u>행정감사 규정</u> 」 ----- ----- -----

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생략)

2. “면책”이란 「행정감사규정」
및 「예천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
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
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
공무원법」과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행정상·재정상 시정
조치 및 제4호의 “경고 등 처분”
등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
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
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
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 규정」 -----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

-----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

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등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
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
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
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
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
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
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
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

제4조-----
-----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
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
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건설교
통과장과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과장급)으로 한다.

③ <신설>

③ (생략)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예천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 심의회 개최
시마다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종료되면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나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

-- 감사대상 기관장-----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 감사대상자-----

② 감사대상자-----

----- 군수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

④ ----- 따른

----- <삭제>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았으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하고, 면책심사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면책심사 처리) -----

----- 받은 경우에는 ----- 서식에 따라 -----

제11조(심의회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군수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 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u>예천군 및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 관</u> (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 <u>예천군과 그 소속기관</u> ----- ----- -----
--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예 천 군



1. 제정 자치법규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나.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3조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 적극행정 책임관
- 위 원 –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가능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선발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함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shinzx@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총무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837, 팩스 : 054-650-6089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 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